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4781

발의연월일: 2022. 2. 16.

발 의 자:이종배·김선교·김성원

박수영 • 박완수 • 윤주경

이채익 · 조명희 · 조수진

추경호 · 홍문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므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스토킹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스토킹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삭제).

법률 제 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스토킹범죄) ①・② (생	제18조(스토킹범죄)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	<u><</u> 삭 제>
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